

대신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대신티e-꿈나무 증권 투자신탁 제 1 호 [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신티e-꿈나무 증권 투자신탁 제 1 호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대신티e-꿈나무 증권 투자신탁 제 1 호 [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대신티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ditm.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09. 03. 17.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09.05.03.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의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1. .

2. , .

3. , .

4. .

5. 가

6. , , , 가
) 가 (가

7. ,

8. 가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 펀드코드 |
|---------------------------|-------|
| 대신 e-꿈나무 증권 투자신탁 제1호 [주식] | 77886 |
| A | 77882 |
| C1 | 77883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1) 가 ,
2 “ ” “ ” .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1) ()

2) () ()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ditm.co.kr))

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2 “ , , 가 ”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 펀드코드 |
|---------------------------|-------|
| 대신 e-꿈나무 증권 투자신탁 제1호 [주식] | 77886 |
| A | 77882 |
| C1 | 77883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변경시행일 | 변경 사항 |
|------------|----------------------------|
| 2008.01.03 | 최초설정 |
| 2008.10.21 | 장기적립식 가입자 세제혜택 - 주식 → 국내주식 |
| 2009.05.0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 , “ 5 ”

4. 집합투자업자

| | |
|-------------|---|
| 회 사 명 | 대신투자신탁운용(주) |
| 주 소 및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빌딩(우.150-884) ☎ 02-769-3246 |

1) “ 4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09.03.17 현재)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 다른 운용 자산 규모 | |
| 최형근 | 1967 | 본부장 | 134개 | 7,025억 | 1995년 대신증권(주) 입사 1995년 대신증권(주) 주식팀, 선물옵션팀 2000년 대신투신운용(주) 주식운용부 |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해당사항없음

1) 2009 3 17 3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써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별 | 가입자격 |
|------------------------|-----------------------------|
| Class A(펀드코드 : 77882) | 인터넷전용,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 Class C1(펀드코드 : 77883) | 인터넷전용,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 KOSPI200 X 90% + CD금리 X 10%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 투자대상 | |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
|---------|-------|--|
| 주식 | 60%이상 | -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비분이 표시된 것(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함) |
| 채권 | 40%이하 |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제외) |
| 어음 | 40%이하 |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이상인 것 |
| 자산유동화증권 | 40%이하 |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 | | |
|-------------|--------------------|--|
| 장내파생상품 | 10%이하 (위험평가액기준) | -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 위험평가액기준 : 투자신탁의 최초 설립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 |
| 수익증권 | 5%이하 | - 법 제110조의 수익증권, 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
| ETF | 30%이하 |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
| 투자증권의 대여 | 50%이하 |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
|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 50%이하 |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
| 투자증권의 차입 | 20%이하 | - 규약 제1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
| 국내주식 | 60%이상 | - 규약 제17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에의 투자는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
| 단기대출 | - |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 금융기관 예치 | - |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
| 양도성예금증서 | - | |
| 기타 | - | -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투자비용 적용예외 | | - 규약 제18조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파생상품)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규약 제18조제6호 내지 제9호, 제19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투자대상 종류 | 투자제한의 내용 | 적용제외 |
|---------|---|------|
| 단기대출 |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 |

| | | |
|-------------------------|--|---|
| <p>동일종목 투자</p> | <p>✓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동일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중 지분증권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 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p>최초설립일로부터 1개월간</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별로 매일의 당해주식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 <p>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p> |
| <p>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p> | <p>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 |
| | <p>각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 <p>최초설립일로부터 1개월간</p> |
| <p>파생상품 투자</p> | <p>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p> | <p>최초설립일로부터 1개월간</p> |
| | <p>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 |

| | | |
|--------------|---|--|
| 계열회사 지분증권 |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 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음. | |
| 후순위채 투자 |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주식형 펀드로서, 거시적인 경제전망에 따라 주식 및 채권의 중·장기적인 자산배분을 결정하며, 채권등의 투자에 의한 이자소득 외에 중·장기적인 주식투자를 통하여 추가 자본수익을 추구하며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실적이 변동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 ▶ 주식 모델 포트폴리오는 업종대표주/우량주/가치주 등으로 구성하며 구성종목에 대한 탄력적인 편입비 관리를 통한 운용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 배당시에는 고배당수익률이 가능한 종목 중심으로 투자하되 주가상승으로 배당수익률 하락 예상시에는 매도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주가변동폭이 미미할 경우 배당투자를 지속적으로 투자합니다.
- ▶ 채권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40% 이내에서 금리전망에 따라 듀레이션을 고려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주력하며,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및 CD금리선물을 이용하여 자산가격하락 위험에 대처합니다.
- ▶ 어음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40% 이하로 투자합니다.
- ▶ 투자자산간 또는 투자자산내에 분산투자 및 손절매제도 시행으로 투자위험을 관리합니다
비교지수 : KOSPI200 x 90 + CD수익률 X 10%

나. 수익구조

- ▶ 주된 투자대상 자산인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의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식에 60%이상의 수준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

| | |
|---------------|---|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시장위험 |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 | 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 |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래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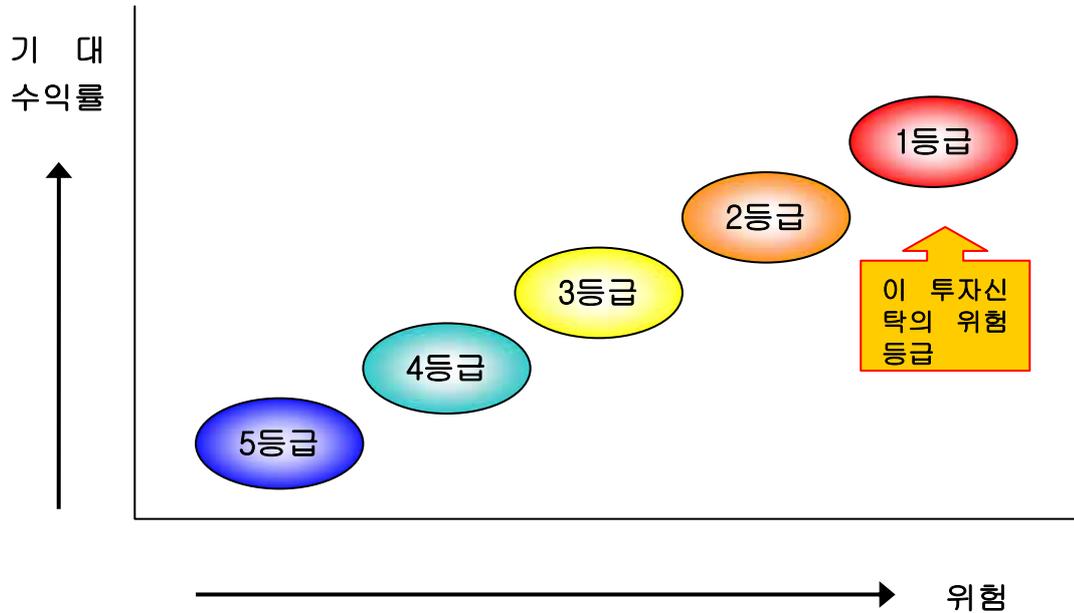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거래상대방 위험 |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유동성 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연기위험 |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투자설명서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환매’의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의 투자에 있어서 신탁재산 60%이상을 우량주식, 가치주식, 고배당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성장형 주식투자신탁으로 투자위험 **5등급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e-꿈나무 증권 투자신탁 제1호 [주식]은 자산의 대부분을 업종별로 우량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식과 고배당주식을 선별·집중투자하여 동 주식시장의 상승에 상승하는 투자수익을 실현시키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대신투자신탁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 위험등급 | 분류기준 | 상 세 설 명 |
|------|---------|--|
| 1등급 | 매우높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구조화된 파생형 증권투자신탁(원금보존형 제외) |
| 2등급 | 높은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하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하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특정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형 및 파생형) |
| 3등급 | 중간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30%이하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3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 절대수익추구형 투자신탁(주식 매입금의 90% 이상 헤지하는 투자신탁) |
| 4등급 | 낮은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채 등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구조화된 파생형 증권투자신탁(원금보존형) |
| 5등급 | 매우낮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F |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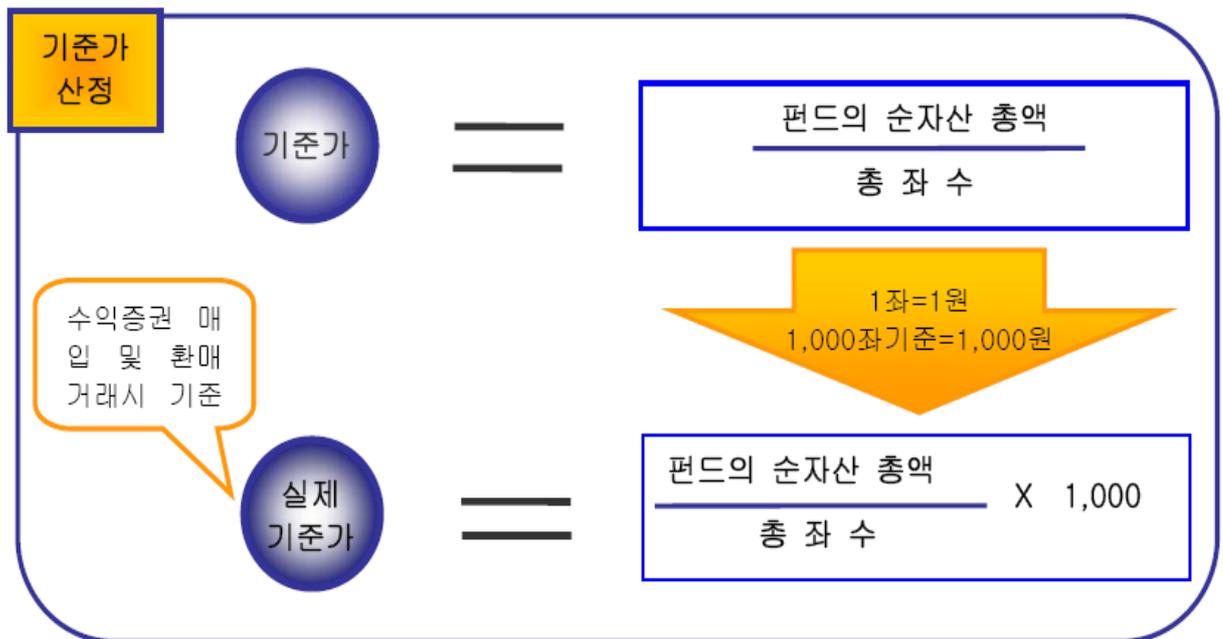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 분 | 내 용 |
|-----|-----|
|-----|-----|

| |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
|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공시방법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 공시장소 |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itm.co.kr) · 판매회사 · 협회 (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1) , 가 , 가 가 가 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①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②비상장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③장내파생상품 |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
| ④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

| | |
|-------------------------|--|
| ⑤비상장채권 |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
|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 ⑦수익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 분 | 지급비율 | | 지급시기 |
|-------|---|----------|------|
| | Class A | Class C1 | |
| 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25% | 없음 | 매입시 |
| 환매수수료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 환매시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 분 | 지급비율(연간, %) | | 지급시기 |
|--------|-------------|-----------|---------|
| | Class A | Class C1 | |
| 집합투자업자 | 연 0.60% | | 매3개월 후급 |
| 판매회사 | 연 0.13% | 연 0.33% | |
| 신탁업자 | 연 0.03% | | |
| 일반사무관리 | 연 0.02% | | |
| 총보수 | 연 0.78% | 연 0.98% | |
| 기타비용 | 연 0.000% | 연 0.000% | 사유발생시 |
| 총보수·비용 | 연 0.780% | 연 0.980% | |
| 증권거래비용 | 연 0.4103% | 연 0.8755% | 사유발생시 |

- 1) () , ()
- 2) . [: 2008.01.03 ~ 2009.01.02] .
- 3) . [: 2008.01.03 ~ 2009.01.02]
- 4) 가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 구분 | 1년 | 3년 | 5년 | 10년 |
|---------|-----|-----|-----|-------|
| Class A | 147 | 410 | 699 | 1,560 |

| | | | | |
|----------|-----|-----|-------|-------|
| Class C1 | 190 | 600 | 1,051 | 2,392 |
|----------|-----|-----|-------|-------|

1) 가 1,000

5%,

가 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 - 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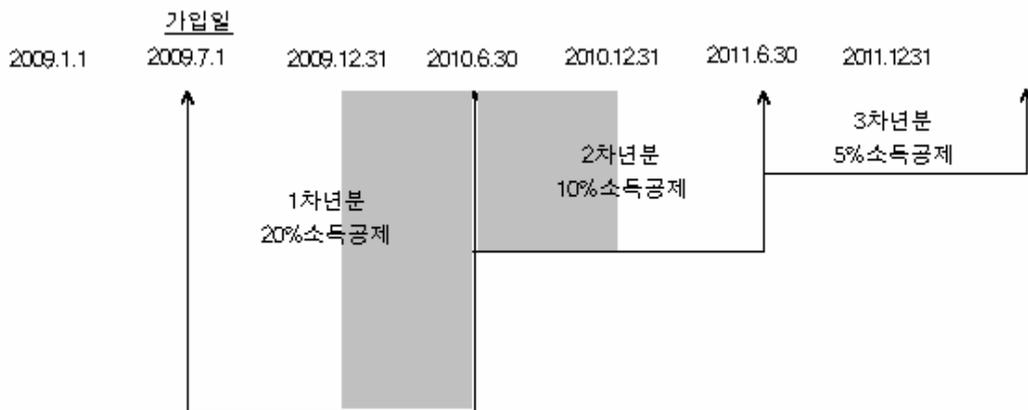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2%)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에도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 ✓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 ✓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 ✓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 ✓ 소득공제 비율
 -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 ✓ 소득공제 사례 : 투자자 A가 2009. 7. 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상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세제우대는 200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에 대한 설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간 | 회계감사법인 | 감사의견 |
|-------|--------|------|
| 제 1 기 | 회계감사면제 | 해당없음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억원)

1) 모펀드

(단위: 원)

| 대차대조표 | | | |
|----------|---|--|--|
| 항 목 | 제 1 기 2009.01.02. | | |
| 1. 운용자산 | 20,368,109 | | |
| 증권 | 18,983,200 | | |
| 파생상품 | 0 | | |
| 부동산/실물자산 | 0 | | |
| 현금 및 예치금 | 1,178,839 | | |
| 기타 운용자산 | 206,070 | | |
| 2. 기타자산 | 0 | | |
| 자산총계 | 20,368,109 | | |
| 1. 운용부채 | 0 | | |
| 2. 기타부채 | 0 | | |
| 부채총계 | 0 | | |
| 1. 원본 | 28,807,274 | | |
| 2. 수익조정금 | -4,269,828 | | |
| 3. 이익잉여금 | -4,169,337 | | |
| 자본총계 | 20,368,109 | | |
| 손익계산서 | | | |
| 항 목 | 제 1 기 (2008.01.03 - 2009.01.02) | | |
| 1. 운용수익 | -4,169,337 | | |
| 이자수익 | 40,695 | | |
| 배당수익 | 249,591 | | |

| | | | | |
|----|------------|------------|--|--|
| | 매매/평가수익(손) | -4,459,623 | | |
| 2. | 기타 수익 | -4,269,828 | | |
| 3. | 운용비용 | 0 | | |
| | 관련회사 보수 | 0 | | |
| | 매매수수료 | 0 | | |
| 4. | 기비타용 | 0 | | |
| 5. | 당기순이익 | -8,439,165 | | |
| 6. | 매매회전율 | 174.63 | | |

A. Class A

(단위: 원)

| 대차대조표 | | | | |
|-------|----------|---|--|--|
| 항 목 | | 제 1 기 2009.01.02. | | |
| 1. | 운용자산 | 12,645,999 | | |
| | 증권 | 12,645,999 | | |
| | 파생상품 | 0 | | |
| | 부동산/실물자산 | 0 | | |
| | 현금 및 예치금 | 0 | | |
| | 기타 운용자산 | 0 | | |
| 2. | 기타자산 | 0 | | |
| 자산총계 | | 12,645,999 | | |
| 3. | 운용부채 | 41,412 | | |
| 4. | 기타부채 | 0 | | |
| 부채총계 | | 41,412 | | |
| 5. | 원본 | 17,974,025 | | |
| 6. | 수익조정금 | -2,136,686 | | |
| 7. | 이익잉여금 | -3,232,752 | | |
| 자본총계 | | 12,604,587 | | |
| 손익계산서 | | | | |
| 항 목 | | 제 1 기 (2008.01.03 - 2009.01.02) | | |
| 1. | 운용수익 | -3,170,183 | | |

| | | | | |
|----------|------------|------------|--|--|
| | 이자수익 | 0 | | |
| | 배당수익 | 0 | | |
| | 매매/평가수익(손) | -3,170,183 | | |
| 2. 기타 수익 | | -2,136,686 | | |
| 3. 운용비용 | | 62,569 | | |
| | 관련회사 보수 | 62,569 | | |
| | 매매수수료 | 0 | | |
| 4. 기비타용 | | 0 | | |
| 5. 당기순이익 | | -5,369,438 | | |
| 6. 매매회전율 | | 0.00 | | |

B. Class C1

(단위: 원)

| 대차대조표 | | | | |
|----------|----------|-------------------------|--|--|
| 항 목 | | 제 1 기 2009.01.02. | | |
| 1. 운용자산 | | 7,722,110 | | |
| | 증권 | 7,722,110 | | |
| | 파생상품 | 0 | | |
| | 부동산/실물자산 | 0 | | |
| | 현금 및 예치금 | 0 | | |
| | 기타 운용자산 | 0 | | |
| 2. 기타자산 | | 0 | | |
| 자산총계 | | 7,722,110 | | |
| 3. 운용부채 | | 17,178 | | |
| 4. 기타부채 | | 0 | | |
| 부채총계 | | 17,178 | | |
| 5. 원본 | | 10,801,558 | | |
| 6. 수익조정금 | | -2,076,328 | | |
| 7. 이익잉여금 | | -1,020,298 | | |
| 자본총계 | | 7,704,932 | | |
| 손익계산서 | | | | |
| 항 목 | | 제 1 기 (2008.01.03 - | | |

| | | | | |
|----------|------------|--------------|--|--|
| | | 2009.01.02) | | |
| 1. 운용수익 | | -3,170,183 | | |
| | 이자수익 | 0 | | |
| | 배당수익 | 0 | | |
| | 매매/평가수익(손) | -3,170,183 | | |
| 2. 기타 수익 | | -2,136,686 | | |
| 3. 운용비용 | | 62,569 | | |
| | 관련회사 보수 | 62,569 | | |
| | 매매수수료 | 0 | | |
| 4. 기비타용 | | 0 | | |
| 5. 당기순이익 | | -5,369,438 | | |
| 6. 매매회전을 | | 0.00 | | |

나. 대차대조표

A. 모펀드

(단위 : 원)

| 과목 | 제1기(2009.01.02) | | | | | |
|-----------------------|-----------------|-------------------|---|----------|---|----------|
| | 금 | 액 | 금 | 액 | 금 | 액 |
| 자 산 | | | | | | |
| 운 용 자 산 | | | | | | |
| 현금및예치금 | | 1,178,577 | | 0 | | 0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178,577 | | | | | |
| 2. 예치금 | | | | | | |
| 3. 증거금 | | | | | | |
| 대출채권 | | 0 | | 0 | | 0 |
| 1. 골혼 | | | | | | |
|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 | | | | |
| 3. 매입어음 | | | | | | |
| 4. 대출금 | | | | | | |
| 유가증권 | | 18,983,200 | | 0 | | 0 |
| 1. 지분증권 | 14,682,400 | | | | | |
| 2. 채무증권 | | | | | | |
| 3. 수익증권 | | | | | | |
| 4. 기타유가증권 | 4,300,800 | | | | | |
| 파생상품 | | 0 | | 0 | | 0 |
| 1. 파생상품 | | | | | | |
| 부동산과 실물자산 | | 0 | | 0 | | 0 |
| 1. 건물 | | | | | | |
| 2. 토지 | | | | | | |
| 3. 농산물 | | | | | | |
| 4. 축산물 | | | | | | |
| 기타운용자산 | | 0 | | 0 | | 0 |
| 1. 임차권 | | | | | | |
| 2. 전세권 | | | | | | |
| 기 타 자 산 | | 206,332 | | 0 | | 0 |
|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 | | | | | |
| 2. 정산미수금 | | | | | | |
| 3. 미수이자 | | 262 | | | | |
| 4. 미수배당금 | | 206,070 | | | | |
| 5. 기타미수입금 | | | | | | |
| 6. 기타자산 | | | | | | |
| 7. 수익증권청약금 | | | | | | |
| 자 산 총 계 | | 20,368,109 | | 0 | | 0 |
| 부 채 | | | | | | |
| 운 용 부 채 | | 0 | | 0 | | 0 |
| 1. 옵션매도 | | | | | | |
|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 | | | |
| 기 타 부 채 | | 0 | | 0 | | 0 |
|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 | | | | | |
| 2. 정산미지급금 | | | | | | |
| 3. 해지미지급금 | | | | | | |
| 4. 수수료미지급금 | | | | | | |
| 5. 기타미지급금 | | | | | | |
| 6. 기타부채 | | | | | | |
| 부 채 총 계 | | 0 | | 0 | | 0 |
| 자 본 | | | | | | |
| 1. 원 본 | | 28,807,274 | | | | |
|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 | | | | | |
| 3. 미월잉여금 | | -8,439,165 | | | | |
| (발행좌수 당기 : 28,807,274 | 좌 | | | | | |
| 전기 : | 좌 | | | | | |
| 전전기 : | 좌) | | | | | |
| (기준가격 당기 : 707.05 | 원 | | | | | |
| 전기 : | 원 | | | | | |
| 전전기 : | 원) | | | | | |
| 자 본 총 계 | | 20,368,109 | | 0 | | 0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 20,368,109 | | 0 | | 0 |

B. Class A

(단위 : 원)

| 과목 | 제1기(2009.01.02) | | | | | |
|-----------------------|-----------------|------------|---|---|---|---|
| | 금 | 액 | 금 | 액 | 금 | 액 |
| 자 산 | | | | | | |
| 운 용 자 산 | | | | | | |
| 현금및예치금 | | 0 | | 0 | | 0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
| 2. 예치금 | | | | | | |
| 3. 증거금 | | | | | | |
| 대출채권 | | 0 | | 0 | | 0 |
| 1. 골혼 | | | | | | |
|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 | | | | |
| 3. 매입어음 | | | | | | |
| 4. 대출금 | | | | | | |
| 유가증권 | | 12,645,999 | | 0 | | 0 |
| 1. 지분증권 | | | | | | |
| 2. 채무증권 | | | | | | |
| 3. 수익증권 | 12,645,999 | | | | | |
| 4. 기타유가증권 | | | | | | |
| 파생상품 | | 0 | | 0 | | 0 |
| 1. 파생상품 | | | | | | |
| 부동산과 실물자산 | | 0 | | 0 | | 0 |
| 1. 건물 | | | | | | |
| 2. 토지 | | | | | | |
| 3. 농산물 | | | | | | |
| 4. 축산물 | | | | | | |
| 기타운용자산 | | 0 | | 0 | | 0 |
| 1. 임차권 | | | | | | |
| 2. 전세권 | | | | | | |
| 기 타 자 산 | | 0 | | 0 | | 0 |
|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 | | | | | |
| 2. 정산미수금 | | | | | | |
| 3. 미수이자 | | | | | | |
| 4. 미수배당금 | | | | | | |
| 5. 기타미수입금 | | | | | | |
| 6. 기타자산 | | | | | | |
| 7. 수익증권청약금 | | | | | | |
| 자 산 총 계 | | 12,645,999 | | 0 | | 0 |
| 부 채 | | | | | | |
| 운 용 부 채 | | 0 | | 0 | | 0 |
| 1. 옵션매도 | | | | | | |
|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 | | | |
| 기 타 부 채 | | 41,412 | | 0 | | 0 |
|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 | | | | | |
| 2. 정산미지급금 | | | | | | |
| 3. 해지미지급금 | | | | | | |
| 4. 수수료미지급금 | 41,412 | | | | | |
| 5. 기타미지급금 | | | | | | |
| 6. 기타부채 | | | | | | |
| 부 채 총 계 | | 41,412 | | 0 | | 0 |
| 자 본 | | | | | | |
| 1. 원 본 | | 17,974,025 | | | | |
|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 | | | | | |
| 3. 이월잉여금 | | -5,369,438 | | | | |
| (발행좌수 당기 : 17,974,025 | 좌 | | | | | |
| 전기 : | 좌 | | | | | |
| 전전기 : | 좌) | | | | | |
| (기준가격 당기 : 701.27 | 원 | | | | | |
| 전기 : | 원 | | | | | |
| 전전기 : | 원) | | | | | |
| 자 본 총 계 | | 12,604,587 | | 0 | | 0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 12,645,999 | | 0 | | 0 |

C. Class C1

(단위 : 원)

| 과목 | 제1기(2009.01.02) | | | | | |
|-----------------------|-----------------|------------------|---|----------|---|----------|
| | 금 | 액 | 금 | 액 | 금 | 액 |
| 자 산 | | | | | | |
| 운 용 자 산 | | | | | | |
| 현금및예치금 | | 0 | | 0 | | 0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
| 2. 예치금 | | | | | | |
| 3. 증거금 | | | | | | |
| 대출채권 | | 0 | | 0 | | 0 |
| 1. 골혼 | | | | | | |
|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 | | | | |
| 3. 매입어음 | | | | | | |
| 4. 대출금 | | | | | | |
| 유가증권 | | 7,722,110 | | 0 | | 0 |
| 1. 지분증권 | | | | | | |
| 2. 채무증권 | | | | | | |
| 3. 수익증권 | 7,722,110 | | | | | |
| 4. 기타유가증권 | | | | | | |
| 파생상품 | | 0 | | 0 | | 0 |
| 1. 파생상품 | | | | | | |
| 부동산과 실물자산 | | 0 | | 0 | | 0 |
| 1. 건물 | | | | | | |
| 2. 토지 | | | | | | |
| 3. 농산물 | | | | | | |
| 4. 축산물 | | | | | | |
| 기타운용자산 | | 0 | | 0 | | 0 |
| 1. 임차권 | | | | | | |
| 2. 전세권 | | | | | | |
| 기 타 자 산 | | 0 | | 0 | | 0 |
|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 | | | | | |
| 2. 정산미수금 | | | | | | |
| 3. 미수이자 | | | | | | |
| 4. 미수배당금 | | | | | | |
| 5. 기타미수입금 | | | | | | |
| 6. 기타자산 | | | | | | |
| 7. 수익증권청약금 | | | | | | |
| 자 산 총 계 | | 7,722,110 | | 0 | | 0 |
| 부 채 | | | | | | |
| 운 용 부 채 | | 0 | | 0 | | 0 |
| 1. 옵션매도 | | | | | | |
|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 | | | |
| 기 타 부 채 | | 17,178 | | 0 | | 0 |
|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 | | | | | |
| 2. 정산미지급금 | | | | | | |
| 3. 해지미지급금 | | | | | | |
| 4. 수수료미지급금 | | 17,178 | | | | |
| 5. 기타미지급금 | | | | | | |
| 6. 기타부채 | | | | | | |
| 부 채 총 계 | | 17,178 | | 0 | | 0 |
| 자 본 | | | | | | |
| 1. 원 본 | | 10,801,558 | | | | |
|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 | | | | | |
| 3. 이월잉여금 | | -3,096,626 | | | | |
| (발행좌수 당기 : 10,801,558 | 좌 | | | | | |
| 전기 : | 좌 | | | | | |
| 전전기 : | 좌) | | | | | |
| (기준가격 당기 : 713.32 | 원 | | | | | |
| 전기 : | 원 | | | | | |
| 전전기 : | 원) | | | | | |
| 자 본 총 계 | | 7,704,932 | | 0 | | 0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 7,722,110 | | 0 | | 0 |

다. 손익계산서

A. 모펀드

(단위 : 원)

| 과 목 | 제1기(2008.01.03-2009.01.02) | | | | | |
|------------------------|----------------------------|--------------|---|---|---|---|
| | 금 | 액 | 금 | 액 | 금 | 액 |
| 운 용 수 익 | | | | | | |
| 1. 투자수익 | | 290,286 | | 0 | | 0 |
| 1. 이 자 수 익 | 40,695 | | | | | |
| 2. 배당금수익 | 249,591 | | | | | |
| 3. 수수료수익 | | | | | | |
| 4. 임대료수익 | | | | | | |
|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 | 135,615 | | 0 | | 0 |
| 1. 지분증권매매차익 | 123,486 | | | | |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 | | | | | |
|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 | | | | | |
| 4. 지분증권평가차익 | 0 | | | | | |
| 5. 외환거래/평가차익 | | | | | | |
| 6. 현금및대환채권매매/평가차익 | | | | | | |
| 7. 기타거래차익 | 12,129 | | | | | |
|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 | 4,595,238 | | 0 | | 0 |
| 1. 지분증권매매차손 | 3,391,358 | | | | |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 | | | | | |
|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 | | | | | |
| 4. 지분증권평가차손 | 0 | | | | | |
| 5. 외환거래/평가차손 | | | | | | |
| 6. 대손상각비 | | | | | | |
| 7. 현금및대환채권매매차손 | | | | | | |
| 8. 기타거래손실 | 1,203,880 | | | | | |
| 운 용 비 용 | | 0 | | 0 | | 0 |
| 1. 운용수수료 | | | | | | |
| 2. 판매수수료 | | | | | | |
| 3. 수탁수수료 | | | | | | |
| 4. 투자자문수수료 | | | | | | |
| 5. 임대자산관련비용 | | | | | | |
| 6. 기타비용 | | | | | | |
|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 -4,169,337 | | 0 | | 0 |
|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 | -0.144732091 | | | | |

B. Class A

(단위 : 원)

| 과 목 | 제1기(2008.01.03-2009.01.02) | | | | | |
|------------------------|----------------------------|--------------|---|---|---|---|
| | 금 | 액 | 금 | 액 | 금 | 액 |
| 운 용 수 익 | | | | | | |
| 1. 투자수익 | | 0 | | 0 | | 0 |
| 1. 이 자 수 익 | | | | | | |
| 2. 배당금수익 | | | | | | |
| 3. 수수료수익 | | | | | | |
| 4. 임대료수익 | | | | | | |
|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 | 214,724 | | 0 | | 0 |
| 1. 지분증권매매차익 | | | | | |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 | | | | | |
|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 | | | | | |
| 4. 지분증권평가차익 | 0 | | | | | |
| 5. 외환거래/평가차익 | | | | | | |
|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 | | | | | |
| 7. 기타거래차익 | 214,724 | | | | | |
|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 | 3,384,907 | | 0 | | 0 |
| 1. 지분증권매매차손 | | | | | |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 | | | | | |
|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 | | | | | |
| 4. 지분증권평가차손 | 0 | | | | | |
| 5. 외환거래/평가차손 | | | | | | |
| 6. 대손상각비 | | | | | | |
|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 | | | | | |
| 8. 기타거래차손실 | 3,384,907 | | | | | |
| 운 용 비 용 | | 62,569 | | 0 | | 0 |
| 1. 운용수수료 | 48,519 | | | | | |
| 2. 판매수수료 | 10,367 | | | | | |
| 3. 수탁수수료 | 2,237 | | | | | |
| 4. 투자자문수수료 | | | | | | |
| 5. 임대자산관련비용 | | | | | | |
| 6. 기타비용 | 1,446 | | | | | |
|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 -3,232,752 | | 0 | | 0 |
|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 | -0.179856877 | | | | |

C. Class C1

(단위 : 원)

| 과 목 | 제1기(2008.01.03-2009.01.02) | | | | | |
|------------------------|----------------------------|--------------|-----|---|-----|---|
| | 금 액 | | 금 액 | | 금 액 | |
| 운 용 수 익 | | | | | | |
| 1. 투자수익 | | 7,847 | | 0 | | 0 |
| 1. 이 자 수 익 | | | | | | |
| 2. 배당금수익 | | | | | | |
| 3. 수수료수익 | 7,847 | | | | | |
| 4. 임대료수익 | | | | | | |
|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 | 130,374 | | 0 | | 0 |
| 1. 지분증권매매차익 | | | | | |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 | | | | | |
|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 | | | | | |
| 4. 지분증권평가차익 | 0 | | | | | |
| 5. 외환거래/평가차익 | | | | | | |
|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 | | | | | |
| 7. 기타거래차익 | 130,374 | | | | | |
|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 | 1,129,528 | | 0 | | 0 |
| 1. 지분증권매매차손 | | | | | |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 | | | | | |
|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 | | | | | |
| 4. 지분증권평가차손 | 0 | | | | | |
| 5. 외환거래/평가차손 | | | | | | |
| 6. 대손상각비 | | | | | | |
|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 | | | | | |
| 8. 기타거래차손실 | 1,129,528 | | | | | |
| 운 용 비 용 | | 28,991 | | 0 | | 0 |
| 1. 운용수수료 | 18,038 | | | | | |
| 2. 판매수수료 | 9,774 | | | | | |
| 3. 수탁수수료 | 745 | | | | | |
| 4. 투자자문수수료 | | | | | | |
| 5. 임대자산관련비용 | | | | | | |
| 6. 기타비용 | 434 | | | | | |
|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 -1,020,298 | | 0 | | 0 |
|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 | -0.094458411 | | | |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모펀드

(단위 : 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08.01.03 - 2009.01.02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 | | | | |
| | | | | | | | | |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나. Class A

(단위 : 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회계기간 중 | | 기간말 잔고 |
|----|--------|--------|----|--------|
| | | 설정(발행) | 환매 | |
| |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 2008.01.03 - 2009.01.02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 | | | | |
| | | | | | | | | |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나. Class C1

(단위 : 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08.01.03 - 2009.01.02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 | | | | |
| | | | | | | | | |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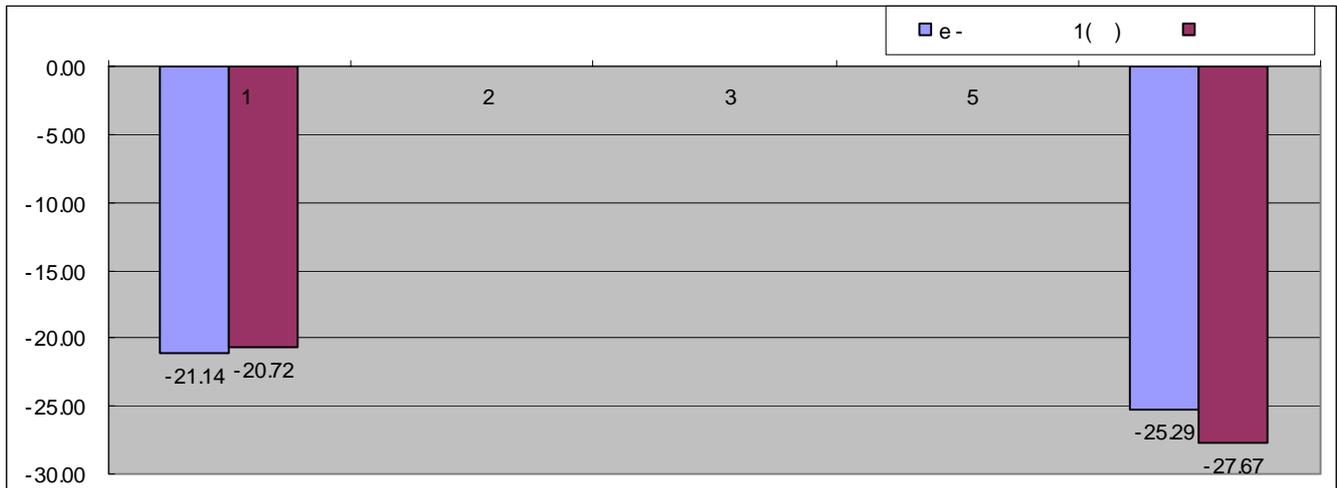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실적의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

| 기간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08.03.18 ~09.03.17 | | | | 08.01.03 ~09.03.17 |
| e-꿈나무주식1(모) | -21.14 | | | | -25.29 |
| 비교지수 | -20.72 | | | | -27.67 |
| e-꿈나무주식1ClassA | -21.78 | | | | -25.92 |
| 비교지수 | -20.72 | | | | -27.67 |
| e-꿈나무주식1ClassC1 | -21.93 | | | | -24.85 |
| 비교지수 | -20.72 | | | | -27.6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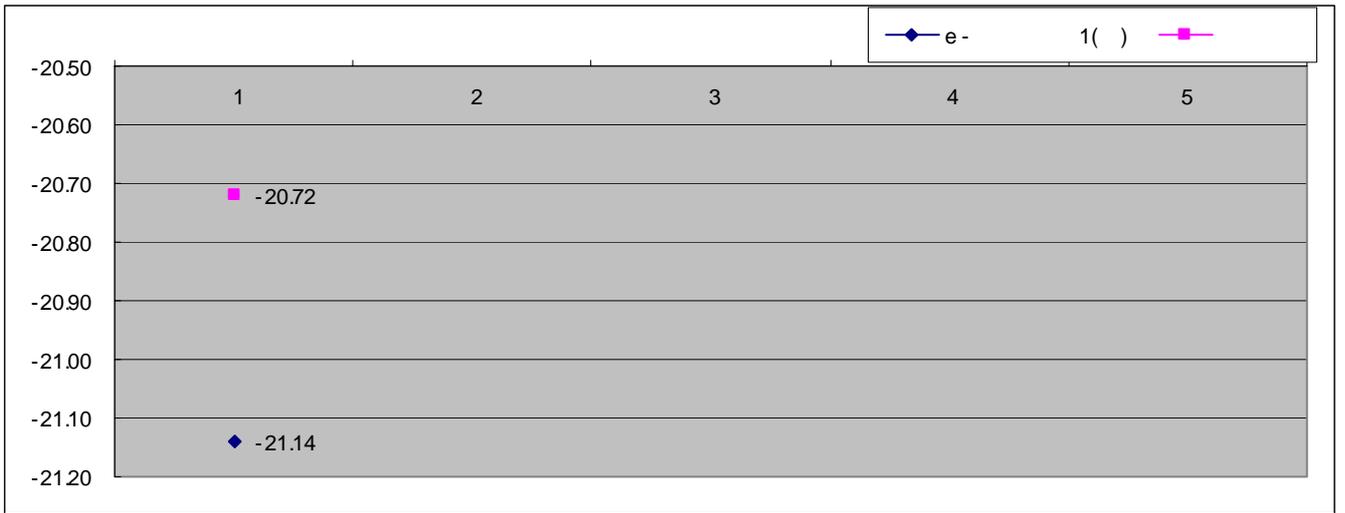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0.9 * KOSPI200) + (0.1 * CD금리)$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

| 기간 | 최근 1년차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 5년차 |
|------------------|-----------------------|-----------------------|--------|--------|--------|
| | 08.03.18 ~09.03.17 | 08.01.03 ~08.03.17 | | | |
| e-꿈나무주식 1(모) | -21.14 | | | | |
| 비교지수 | -20.72 | | | | |
| e-꿈나무주식 1ClassA | -21.78 | | | | |
| 비교지수 | -20.72 | | | | |
| e-꿈나무주식 1ClassC1 | -21.93 | | | | |
| 비교지수 | -20.72 | | | | |

주 1) 비교지수 : $(0.9 * KOSPI200) + (0.1 * CD금리)$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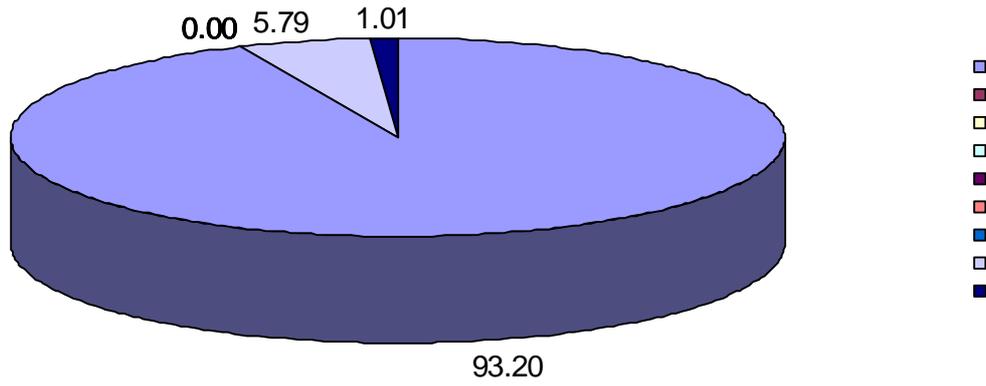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6)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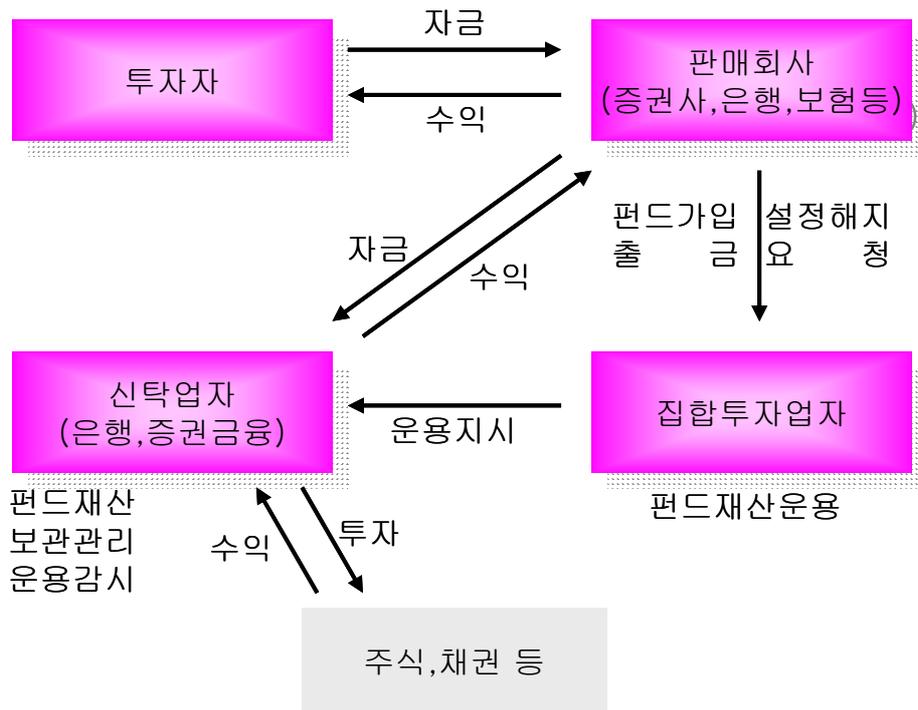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01.02 현재 / 단위 : 억원, %]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자산 | 기타 | | | |
| KRW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93.2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5.79) | (1.01) | (100.00) |
| 합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93.2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5.79) | (1.01) | (100.00)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 | |
|----------|--|
| 회사명 | 대신투자신탁운용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빌딩9층 (연락처 : 02-769-3246, www.ditm.co.kr) |
| 회사 연혁 | 1988. 3 대신투자자문(주) 설립 (납입자본금 10억원) 1996. 6 대신투자신탁운용(주)로 (300억으로 증자) 1997. 7 투자신탁운용업 허가(주식형 투자신탁 업무개시) 1997. 7 공사채형 투자신탁 업무개시 |
| 자본금 | 300억 |
| 주요주주현황 | 대신투자신탁(주) (100 %) |

2009.03.17. 기준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 계정과목 | 2008.3.31 | 2007.3.31 | 계정과목 | 07.4.1 ~ ~ 08.3.31 | 06.4.1 ~ ~ 07.3.31 |
|-------------|------------|------------|-------------|-----------------------|-----------------------|
| 유동자산 | 343 | 368 | 영업수익 | 58 | 59 |
| 고정자산 | 56 | 41 | 영업비용 | 46 | 55 |
| 자산총계 | 399 | 409 | 영업이익 | 12 | 4 |
| 유동부채 | 2 | 4 | 영업외수익 | 0 | 4 |
| 고정부채 | 2 | 1 | 영업외비용 | 0 | 0 |
| 부채총계 | 4 | 5 | 경상이익 | 12 | 8 |
| 자본금 | 300 | 300 | 당기순이익 | 9 | 6 |
| 이익잉여금 | 95 | 104 | | | |
| 자본총계 | 399 | 404 | | | |

라. 운용자산 규모(2009.03.17 현재 / 억원)

| 구분 | 증 권 | | | | | 부동산및 부동산파 생 | 특별자산및 특별자산파 생 |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 MMF | 총계 |
|-----|-------|-------|-------|-------|------|-------------------|---------------------|---------------------|-------|--------|
|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파생형 | 재간접형 | | | | | |
| 수탁고 | 3,516 | 3,341 | 4,214 | 2,784 | 316 | 115 | 2,458 | 0 | 4,139 | 20,881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 사 명 | 국민은행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 가 9-1 ☎ 1599-9999 |
|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 : www.kbstar.com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20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가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 사 명 | 신한아이타스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빌딩 4층 ☎ 02-2168-0400 |
|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 www.shinhanaitas.com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회 사 명 | 한국채권평가 | 나이스채권평가 | KIS채권평가 |
|--------------------|--|--|--|
| 주 소 및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 로 211번지 ☎ 02-399-335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 의도동 15번지 ☎ 02-398-39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 의도동 35-4 ☎ 02-3215-1400 |
|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 www.koreabp.com | www.npricing.co.kr | www.bond.co.kr |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0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로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

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ditm.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최근 1년)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 이해관계인 | | 거래의 종류 | 자산의 종류 | 거래 금액 |
|--------|------|--------|--------|----------|
| 성명(상호) | 관계 | | | |
| 대신증권 | 최대주주 | 위탁거래 | 주식 | 27.01076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 구분 | 내용 |
|--------|--|
| <증권거래> | <p>①선정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p>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p>[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p> |

| | |
|------------|--|
| |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
| <장내파생상품거래> | <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 용 어 | 내 용 |
|-----------|---|
| 금융투자상품 |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집합투자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투자회사 |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수익증권 |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폐쇄형 |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모자형 |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 종류형 |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자본이익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
| 배당소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
| 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선취수수료 |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후취수수료 |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환매수수료 |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
| 설정 |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투자자총회 |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

| | |
|-------------|---|
| 투자금융협회 펀드코드 | 투자금융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레버리지효과 |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 선물환거래 |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
| 금리스왑 |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 성과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
| 신주인수권부 사채 |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
| 전환사채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
| 주식워런트 |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

()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대신 e-꿈나무 증권 투자신탁 제1호 [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판매직원 성명: 서명) -----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집합투자기구 명칭 : 대신 e-꿈나무 증권 투자신탁 제1호 [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고객 확인 사항 | 고객기재사항 |
|--|------------|
|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 (받았음) |
|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적합함) |
|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 (제공받고 들었음) |
|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